

"기술제일, 인간존중, 미래창조"



유 신

수 신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

(경 유)

참 조 토목부장

제 목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업체선정 승인 요청

1. 개봉철도20-247호(2020.06.25.)관련입니다.
2. 위 호와 관련하여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의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업체 선정 승인 요청이 제출되어 붙임과 같이 검토 보고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1. 검토 의견서 1부.
2. 시공사 공문 사본 1부. 끝

개 봉 고 가 성 능 개 선 공 사
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김 동 명



담당 류 동 식

단장 김 동 명

협조자

시행 유신개철20- 159호(2020.07.01.)

접수 ()

우 08329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20길 14, 성암빌딩 501호

/ <http://www.yooshin.co.kr>

전화 02-2060-3796

/ 전송 02-2060-3797 / gaebong0617@naver.com

/ 공개

검 토 의 견 서

□ 건 명 :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업체 선정 검토

□ 관련근거

1. 정기안전점검

○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1항 1호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

제100조(안전점검의 시기·방법 등)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,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.

1.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

○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 1항

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

제23조(정기안전점검의 실시) ①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발주자(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)의 확인을 받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. (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532호, 2018. 8. 27.)

2. 초기점검

○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1항 3호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

제100조(안전점검의 시기·방법 등)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,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.

3.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(임시사용을 포함한다)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

○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5조 1항

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

제25조(초기점검의 실시) ① 시공자는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(임시사용을 포함한다)하기 전에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점검·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「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」에 따른 정밀점검 수준의 초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□ 검토목적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업체 선정이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.

□ 검토내용

1. 건설안전점검기관 현황

- 업체명 : 성목안전기술원(주)
안전진단전문기관(등록번호 제 서울-149호, 17.07.27.)
- 기술자 : 특급기술자(12인), 중급기술자(1인), 초급기술자(1인)

2. 건설안전점검기관 확인사항(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)

- 건설안전점검기관 자격유무
 - 1) 건설안전점검기관 여부 : **적정**
 -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(등록번호 제 서울-149호, 17.07.27.)
 - 한국시설안전진단공단 등록 업체
 - 2) 건설안전점검기관 설계, 시공사의 동일계열회사 제외기관 해당여부 : **적정**
 - 비 동일계열회사 확인서
 - 3) 건설안전점검기관 영업정지 등에 따른 자격 유지여부 : **적정**
 -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(한국시설안전공단)
 - 4) 건설안전점검기관 점검장비 보유여부 : **적정**
 -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5에 의한 점검 장비 보유

3.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직무분야 등록여부

- 공사 중 안전점검의 해당분야 실시 여부
 - 1) 직무분야 : **적정**
 - 안전진단 전문기관(등록번호 제 서울-149호, 17.07.27.)
(교량 및 터널, 수리)
 - 2) 해당직무분야 안전점검책임기술자 등 기술자 보유여부 : **적정**
 - 책임기술자(정진화, 토목 특급기술인)
 -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에 따른 인력을 보유
- 안전점검 실시계획의 적정성 검토여부 : **적정**
 - 과업수행 계획서 작성

□ 검토의견

-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의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업체선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규정 의하여 업체 선정 내용 및 기타 사항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됨

붙 임 : 1. 관련법규

2. 건설안전점검기관 관련문서(성목안전기술원)

2020. 07.

개 봉 고 가 성 능 개 선 공 사
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김 동 명

